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김정태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2598호

다. 발의일자 : 2021.08.11

라. 회부일자 : 2021.08.18

2. 제 안 사 유

- 서울시 상수도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,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2020년 유충 사건으로 음용률이 저하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임.

이에 급수과정에서 오염된 수돗물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서울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수질사고를 조기에 대응하고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급수관의 오염된 수돗물 조기 차단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(안 제40조의4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 법령 :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깨끗한 아리수를 서울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오염된 수도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과정 수질관리를 위한 조치 마련

- 현행 「수도법」 제33조는 일반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대상에 따라 소독 및 수질검사, 그 밖의 위생조치(이하 “위생조치”라 함) 등을 취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40조의4제2항은 상위법령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위생조치 일환으로 수질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된 수도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후시 모를 수질사고 발생시 조기에 수습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- 다만, 현행 조례 제40조의4는 ‘수도사용자’에게 부여된 위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‘수도사업자’에 대한 추가적인 위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별도 조(안 제40조의6)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,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말 지역에서 수도사업자의 수질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임.

또한, 본 조례안에 명시된 ‘급수 자동드레인’은 「상수도 설계기준¹⁾」과 「스마트 관망관리 가이드북²⁾」에 따라 관말 정체지역에 설치하는 장치로써 동 설비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(설비)으로 수질악화 방지가 가능하므로 ‘급수 드레인’을 ‘배출장치’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.

개 정 안	수 정 (안)
<p>제40조의4(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<u>지도·감독하고,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0조의4(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<u>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40조의6(급수과정 수질관리) ①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말 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배출장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

1) 5.11 자동드레인 설비(Part. 09. 상수도 배수시설 설계기준)

- 관말 정체 지역의 정체수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말지점에는 순환관망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. 다만, 순환관망 형성이 어려운 지역은 자동드레인 설비의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.

2) 3.2.7 자동드레인 설비

가. 설치목적

- 수질계측설비 이상 수질 발생시 자동드레인을 작동시켜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여 비상 시 수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함이다.